

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(안) 審 査 報 告 書

2005. 2. 18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2월 7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2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5. 2. 18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광 우)

가. 제정이유

-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이 제정(2004.3.11)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각각 별도로 운용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·관리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함.(안 제2조)
- 재난관리기금 전용 계좌를 설치·관리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의 3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토록 함.(안 제3조)
-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.(안 제4조)
-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은 구청장에게 함. (안 제5조)
- 회계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(기금운용관)과 치수관리담당주사(기금출납원)로 함. (안 제6조)

-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.(안 제8조)
-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.(안 제12조)

다. 제정근거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- 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- 5. 討 論 要 旨 : 없 음
- 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- 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- 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